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878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재판경과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87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200582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2가합2082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2005826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보관비용이 이 사건 지장물 중 훼손되지 않은 나머지 물품의 시가액을 상회한다는 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보관하는 것은 그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피고가 당초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공매처분을 요청하는 등으로 원고의 사무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의 보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2. 7. 2.까지는 원고의 사무관리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취거하여 갈 것을 촉구하면서 그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하거나 공매처분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이 폐기되거나 공매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지장물의 보관료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지장물을 폐기하거나 공매처분하지 아니한 채 사무관리를 계속한 이상 피고의 비용상환의무가 면제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지장물의 잔존가치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소유자인 피고의 이 사건 지장물 취거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장물의 가치가 원고에 의하여 전부 감소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취거할 의무가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취거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원고의 2015. 5. 16.자 준비서면에서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관련 주장을 종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더하여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것으로 선택한 후, 원심이 사무관리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2012. 7. 3. 이후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가 종료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보관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지 등에 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 증거가 없으므로, 2012. 7. 3. 이후의 비용상환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2. 7. 3. 이후의 이 사건 지장물 보관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사무관리자가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도로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추가한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는 당초의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 먼저 원고에게 당초의 청구원인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고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청구원인이 정리되는 경우, 2012. 7. 3. 이후의 금전청구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원인인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를 기각하였다면 그 예비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설령 위 각 청구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선택적 관계에 있더라도 원심이 2012. 7. 3. 이후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를 기각한 이상 원심으로서의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사무관리의 종료시점 이후에 현존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증거가 이루어진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또한 적어도 2012. 7. 2. 당시까지는 이 사건 지장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의 그 판시 사유로 2012. 7. 3. 이후의 비용상환청구를 기각하기에 앞서 2012. 7. 3. 이후 현존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하거나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한편, 그에 대한 증거를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존이익에 관한 주장,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2. 7. 3. 이후의 비용상환청구를 배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보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무관리 종료 시의 비용상환청구에 있어 현존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